

따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초기화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3)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게임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선전의 제한(영 제20조)

(1) 게임제공업자 등이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 및 수단을 규정함.

(2) 게임제공업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할 수 없음.

(3)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을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0월27일**

**국무총리      한 명 숙**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명 균  
장                  관**

**●대통령령 제1971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수출·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1. 국제 규모의 건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 그 밖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제3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창업자와 우수 음악상품 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조건만을 표시하고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 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표시 연월일과 이용조건만을 표시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366호  
부  
과  
2006.10.27. (금요일)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제작·수입 또는 복제하는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부터 적용한다.

③(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음반의 기획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음반 제작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제17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30만원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3.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300만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 범위·절차(영 제2조 및 제3조)
- (1)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음악의 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이나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음악상품 등의 창작자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음악산업의 창업과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음악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음악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영 제4조)

(1) 음악산업 관련자료와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3)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강화(영 제5조)

(1)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 3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연습장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직접 관련 법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정(영 제6조)

(1)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유통을 방지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그 밖의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3)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여 불법 복제·유통을 방지하고 음반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음반 등의 상호, 등급분류의 표시(영 제11조)

(1)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음반과 음악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과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되, 등급표시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예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3) 음악파일이나 음악영상파일에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10월27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대통령령 제19719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9월말까지